

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36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00. 8. 30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주민자치센터의 설치등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에서 이관시켰던 사무에 대하여 동장의 수입권을 구청장이 환원 받아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인감증명발급 등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함.
- 나.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함.
- 다. 어린이놀이터관리 및 묘지개장신고등에 관한 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함.
- 라. 동 수행사무를 제외한 동장의 권한·사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본문중 “동장(단, 당리동장, 구평동장은 제외한다)”를 “동장”으로 한다.

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별표2)

| 실과별 | 번호 | 위 임 사 무 명 | 근거및적용법률 | 수임처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사회복지과 | 1 | ①매화장신고 및 신고증교부 | 매장및묘지에 관한법률제5조 | 동 장 |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0. 1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②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③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본문중 “동장(단,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)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④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중 “동장(단,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)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| | 개 정 안 | | | | |
|---|--|--|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<u>동장(단, 당리동장, 구평동장은 제외한다)</u>에게 위임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| | 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 | | | |
| (별표2) | | | (별표2) | | | | |
| 성과별 | 위임사무명 | 수임처 | 성과별 | 위임사무명 | 수임처 | | |
| 총무과 |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외국인등록및 거류신고증 기재 ②외국인등록대장 및 등록표비치 관리 ③거류지변경신고 수리 ④외국인등록 및 신고사항통보 | 동장 | <삭제> | <삭제> | <삭제> | | |
| | 재무과 | ①소규모개발사업 및 예정가액 200만원이하 공사비집행 | | | | <삭제> | <삭제> |
| | 민원봉사과 | ①외국인인감증명발급 | | | | <삭제> | <삭제> |
| | 사회복지과 | ①어린이놀이터관리 ②매화장신고 및 신고증교부 ③묘지개장신고 및 신고증교부 | | | | 동장 | 사회복지과 |